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1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7년 3월 19일

○ 상정일자 : 제258회 임시회

2007년 3월 19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일부 조 명칭을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띄어쓰기

- “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정정

나.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관계법률 조 변경

- 제2조제5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”로 한다. (안 제2조제5호)
- 제2조제6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”로 한다. (안 제2조제6호)

5. 검토의견

-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정정하고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)가 제34조로 제34조(교육기관의 설치)가

제32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